

# 최근 일본의 제품안전관리 동향



강갑수

안전품질정책과장  
02-509-7238  
gabs@nke.go.kr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근거한 제품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의 이해

## 서론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안전한 제품의 제조·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기관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소비자에 의한 제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사용 등 사업자, 행정부, 소비자 각자가 적절히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판매의 방지는 물론,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에 관한 정보를 사회전체가 공유하며 그 개발의 방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조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에 제품사고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사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소비생활용품안전법」(1973년 법률 제31호, 이하 「소안법」이라 한다)에서 「제품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가 만

들어졌다. 사업자들은 사업을 할 때 소안법의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품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착실히 이행하여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제품사고에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 제도 도입의 배경

2006년에 사회분제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가스 순간온수기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 사상사고와 가정용 세탁기에 의한 유아의 손가락절단 사고 등 우리의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변제품에서 심각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품사고에 대한 대응을 상세히 조사·분석한 결과, 제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사고정보를 제공 혹은 주의환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과 행정부에 대해서도 사고정보가 거의 보고되지 않아 사고의 재발방지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행정적인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충분하

게 이루어지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생활용품의 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어 2006년 12월 6일 공표,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은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반법으로 1973년에 공포, 다음해에 시행되어 시대의 요청에 맞추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안법은 소비생활용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제도의 개요

소안법의 제품사고 정보보고·공표제도는 크게 나누어 ①사고정보의 수집과 공표, ②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의 두 가지 조치로 이루어져있다. 본 제도에서는 사고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공표에 의하여 그 후에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① <사고정보의 수집과 공표>

○ 사고정보에 관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  
소비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사업자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판매에 관계된 소비생활용품에 대하여 발생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소안법 제34조 제1항)

○ 제조·수입업자에게 사고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소비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된 소비생활용품에 대하여 중대한 제품사고가 발생했음을 알았을 때,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명칭, 형식,

사고의 내용 등을 경제산업성대신(주부대신)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소안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경제산업대신(주부대신)이 사고내용 등을 신속히 공표한다.

경제산업대신은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따라 중대제품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소비생활용품의 명칭, 형식, 사고의 내용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표한다. (소안법 제36조 제1항)

○ 판매사업자 등은 중대제품사고를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생활용품의 소매판매업자, 수리사업자 또는 설치공사사업자는 중대제품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중대제품사고의 내용을 해당 소비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소안법 제34조 제2항)

#### ②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 사고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

소비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된 소비생활용품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품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품의 자취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안법제38조 제1항)

○ 판매사업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소비생활용품의 판매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생활용품의 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때 해당 조치 등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위해방지명령(소안법 제39조 제1항)이 발동되었을 때에는 협력의무가 발생한다 (소안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 소비생활용 제품의 정의

소안법에서는 소비생활용제품이란「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타법에 관리근거를 갖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일반소비자의 생활에 제공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소안법의 대상제품이 된다.

소안법에서는 소비생활용제품에서 제외된 제품(타법에 관리근거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소비생활용제품 그 자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기술혁신 등으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 세상에 출시될 때마다 소비생활용 제품으로 추가·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일반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생활용 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만을 한정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생활용 제품이란 전기용품이나 가스기구 등을 포함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제품」이란 공업적 가공을 거친 것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 구조물(유원지의 회전목마 등), 천도 차량, 1차 생신품(원유, 철광석, 석면 등)은 소안법의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부품」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고, 제품 조립용으로 사용되며, 일반소비자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용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비생활용제품에 조립되어 사용되지만 시장에서 일반소비자에 판매되고 있는 건전지, 커패시터의 교체용 갑판, 스키 바인딩 등은 이미 부품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제품으로 간주되어 이것들은 소비생활용 제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소안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두어 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제품은 소비생활용 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안법에 근거하는 사고 보고의 의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품사고정보의 수집·보고는 사업자의 기본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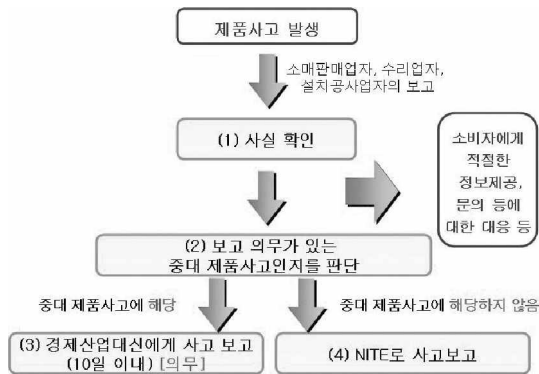
제품사고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해서 소안법 제34조에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소비생활용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소매판매업자(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제조, 수입 또는 소매 판매와 관련되는 소비생활용 제품에서 발생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34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사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
- ② 소비생활용 제품의 소매판매업자, 수리업자 또는 설치공사자는 그 소매 판매, 수리 또는 설치 공사와 관련되는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생활용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되는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 중대 제품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는,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 내용 및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수량 및 판매한 수량을 주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기업규모 혹은 기업 형태를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소비생활용 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고보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여기에서 주부대신이란, 소비생활용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의 소관부처 대신을 말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생활용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경제산업대신이 보고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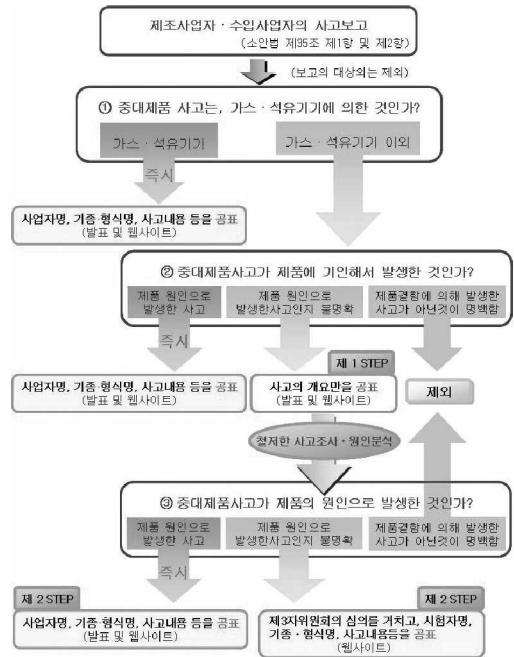
〈 제품사고정보 보고체계 〉



경제산업성에 의한 중대 제품사고의 공표

경제산업대신 확인 하에 중대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산업대신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중대 제품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거나 중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았을 경우에,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중대 제품사고와 관련되는 소비생활용 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및 기타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사용에 수반하는 위험의 회피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한다.

〈 사고정보 공표 흐름도 〉



경제산업대신은 중대 제품사고 정보를 공표할 때, 일본에서 소비생활용 제품의 사고 분석 등의 핵심적 전문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 기술기반기구(NITE)에 소비생활용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상의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한 정보는 모두 NITE와 공유하며 NITE가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할 때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 제품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소비생활용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에는「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1973년 법률 제 112호)」에 의해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 정보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고, 후생노동성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 시사점

일본이 소비생활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품사고 발생시 제품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대 제품사고에 대하여는 주부부처 대신이 공표하여 더 이상 제품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으로 규정된 것은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공정거래, 정보제공, 불만처리 등 등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서는 구체적인 제품의 범위, 사고의 정의, 제품사고정보 수집제공, 공표 등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식면이 함유된 탄크(활식)를 사용한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이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지난번 노트북·PMP 등 휴대전자기기용 리튬이온배터리 발화사고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용 지우개가 유통되어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고조 시킴으로써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제품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중대한 제품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즉시 공표할 수 있는 제품안전에 관한 기본법 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제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및 정부 등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 기술표준 2009.5